



## 악취방지법 시행령

[시행 2012.10.9] [대통령령 제24135호, 2012.10.9, 일부개정]

환경부 (대기관리과) 044 - 201 - 6901

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 「악취방지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1.1.26]

**제1조의2(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)** ① 「악취방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(이하 "악취관리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시설
2.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
  - 가. 「학교보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
  - 나.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(이하 "배출허용기준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시설
- ② 특별시·광역시·도(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)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0.9>

[본조신설 2011.1.26]

**제2조(조치기간의 연장 사유)**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"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1.10.28>

1.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
2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
3.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4. 천재지변,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

[전문개정 2011.1.26]

**제3조(개선명령의 조치기간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(이하 "대도시의 장"이라 한다)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0.9>

②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1.26]

**제4조(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)** ①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될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, 개선기간, 개선내용,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·배출농도 및 악취저

감관리계획, 개선 이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.

1.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·변경·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
2.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
3. 단전(斷電)·단수(斷水)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
4. 천재지변,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

②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1.26]

**제5조(과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)**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축산시설
2. 유기·무기화합물 제조시설. 다만,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·부원료(副原料)·용수(用水) 또는 제품[반제품(半製品)]을 포함한다]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1.26]

**제6조(개선권고에 관한 조치기간)** ① 특별자치도지사,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(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도지사,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권고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1.26]

**제7조(조치 이행 확인)** 특별자치도지사,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체 없이 그 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1.26]

**제8조(관계 기관의 협조)** 법 제20조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4조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
2. 하수관거·하천·호소(湖沼)·항만 등 공공수역의 악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

[전문개정 2011.1.26]

**제8조의2(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)**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환경부장관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(이하 "악취저감기술 지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제외한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 중 법 제8조·제8조의2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2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
3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

- ②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,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,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악취저감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④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,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10.9]

**제9조(권한·업무의 위임과 위탁)**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8조제1항·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,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발급·공고에 관한 사항
2.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
3.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청문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·변경·운영 신고의 수리 및 조치기간의 연장승인
2.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
3.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
4. 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·징수
5.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
6.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
7.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
8. 법 제30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
9.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
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와 이 영 제8조의2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 업무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.<신설 2012.10.9>

[전문개정 2011.1.26]

[제목개정 2012.10.9]

**제1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,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1.26]

**부칙** <제18695호,2005.2.7>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**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2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, 동조제3항중 "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,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"를 "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"로 한다.

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제48조제1항제19호 자목을 삭제하고, 동호 차목중 "제4호의2, 제4호의3 및 제5호"를 "제4호의2 및 제4호의3"으로 한다.

별표 3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.

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악취방지법」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

③환경, 교통,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.

**부칙** <제20297호,2007.9.28>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**제2조**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⑥ 부터 ⑪ 까지 생략

**제3조** 생략

**부칙** <제22639호,2011.1.26>

**제1조**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(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.

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.

**부칙** <제23267호,2011.10.28>

**제1조**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
⑩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"으로 한다.

⑪부터 <18>까지 생략

**제3조** 생략

**부칙** <제24135호,2012.10.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